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00 발의연월일 : 2025. 4. 21.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강승규 · 김용태 · 김상훈

서명옥 • 이달희 • 조배숙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 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제5조의2 신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 마. 시·도 및 시·군·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 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7.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제5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①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종합적 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실종아동등 관련 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실종아동등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 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 ④ 위원회는 실종아동등 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4(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 ①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하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실

종아동등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전담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관리,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5(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동의를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음성·문자·그림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의의 절차·방법 및 예외 사유 등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수집 장치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	
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과의
	<u>연계·협력 체계 구축</u>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u><</u> 삭 제>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	
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	
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	
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
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	탁) ①
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	<u></u> 「아동복지법」 제10조
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신설>

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 터-----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 원회) ①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 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 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

 한 사항
- 2. 실종아동등 관련 정책의 개

 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실종아동등 관련 부처 간 협 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 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 족부장관
-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
 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 ④ 위원회는 실종아동등 정책 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 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실태파 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

①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각각 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관리,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민간전문인력을 둘수 있다.

<u>제7조의5(위치정보</u> 수집장치의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 집장치를 보급할 때 개인위치 정보주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동의를 표명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음 성·문자·그림 등 다양한 의

 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당사

 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의의
 절차・방법
 및 예외

(4) 동의의 설차·방법 및 예외사유 등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수집장치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